장애인 ·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주제: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일 시 1 2016년 12월 20일(화) 13:4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공동대표 오세정 · 신용현)

장애인 ·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Contents

1.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완식 팀장	• • •	21
2.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노아인협회 ICT위원장 이승택 이사	• • •	31
3.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윤은미 본부장	• • •	47
4.	언론이 바라본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및 실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주상돈 센터장	• • •	53
5.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지원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 • •	61

[별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장애인 ·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Program

일시 2016. 12. 20. (화) 13:4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시 간	프로그램
13:10~13:40(30')	참석자 등록
13:40~14:10(30′)	개회식
14:10~15:35(85')	주 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좌 장: 김지인 건국대학교 교수 발표 및 토론 ① (10'):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 팀장 발표 및 토론 ② (10'):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발표 및 토론 ③ (10'): 윤은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본부장 발표 및 토론 ④ (10'): 주상돈 전자신문 센터장 발표 및 토론 ⑤ (20'):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및 토론 ⑥ (5'): 박성남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 과장 발표 및 토론 ⑦ (5'):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발표 및 토론 ⑧ (5'): 김정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과장
15:35~16:05(30')	지정 토론 및 Q&A
16:05~16:10(5')	폐 회

개회사



국회의원 오세정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오세정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제공과 교류, 이를 통한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까지,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큰 기 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화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즉시, 다른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사회가 빠르게 정보화로 진입해가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접근권 문제 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 강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은 수강신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 사례는 우리사회의 정보접근권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고령 자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본질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전자신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오세정

인사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입니다.

우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권 보장 토론회'를 열어 주신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신용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증진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항상 앞 장서 주시는 국민의당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학계, 경제계,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대응전략과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은 지금의 디지털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과학문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층의 정보 접근 취약 계층에서는 4차산 업혁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외되고 멀어 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 조회와 이체가 어려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은행에 찾아가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또 스마트폰 과 개인 컴퓨터로 온라인 쇼핑과 뉴스 보기에도 어렵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물론 '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과 노령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 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들이 하루빨리 뒷받침 되 어야 합니다.

국가의 선진화와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제도 가 어느 수준까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약자에게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혜택까지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특히 25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 어르신께도 디지털 정보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시행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고령층 등의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에게 정보의 격차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되고,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악순 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다른 국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

환영사



국회부의장 박주선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박주선입니다.

「장애인 ·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더욱 필요한 12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분들과 본 토론회 주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T·모바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 격차는 여전합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저소득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3분의 2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일반국민 100% 기준)은 56.3%로 저소득층(74.5%)나 결혼이민자(7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더불어 이들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 보장 방

안의 토대가 마련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0. 국회 부의장 박주선

축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오늘 장애인과 고령자의 ICT 이용 현황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여 주신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과 국민정책연구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지인 교수님, 발표와 토론을 하여 주시는 김완식 팀장님, 임승택 이사님, 윤은미 본부장님, 주상돈 센터장님, 이성일 교수님, 박성남 과장님, 강인철 과장님, 김정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두에 20대 국회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없음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는 이웃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자살율이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는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정보화 시대가 되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ICT기기 이용을 통한 정보 접근성은 쉽지 않습 니다. 음식점에서도 스마트폰을 만지작대며 할인 쿠폰을 들이대고 적 립을 하곤 하지만 '디지털 문맹'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바라만 보아 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업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IoT(사물인터넷) 같은 최신의 ICT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 12. 20.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축사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의 정보접근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과 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세정 의원님과 국민정책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CT 발전은 그간 현대인들이 익숙해져있던 삶의 패턴과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선진국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입은 빨라졌고,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이 청년 학생 등 젊은 세대에 편중되어 발전하고 있고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 어르신의 정보접근권 문제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진정한 복지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접근권은 이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언론 · 방송 매체의 발전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 언론매체에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규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빠른 ICT 발전은 또 다른 정보접근권 문제를 야기하였고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ICT가 복지,의료 서비스 등 삶의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생존권 측면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 국민정책연구원은 국민의당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사회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대책을 구체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초대 원장이신 오세정 의원님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국민정책연구원을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국회와 정당에서 깊이 논의되지못한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데 많은 고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통해 장애인 어르신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법령 정비, 제도 마련보다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세대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좌장, 발제자, 토론자,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신 귀한 주역이라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 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정 의원님,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병돈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준비해주신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와 전자신문의 주상돈 센터장님, 성균관대학교의 이성일 교수님 그리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활전반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화'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스마트한 시대의 각종 편의와 혜택에서 번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관련 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81%에 달하는 요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컴퓨터교육에만 치우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ICT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자리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들이마련되고, 다양한 사회 지원 활동이 전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 될 다양한 의견들을 새겨 듣고, 국 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준비 해 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오세정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장



건국대학교 교수 김지인

현재 사용자인터페이스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 1/SC35) 국내그룹 의장을 맡고 있다. 1982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학사)와 1984년 KAIST 전산학과(석사)를 졸업하고 1993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컴퓨터 및 정보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건국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무처장, 2015년 학국정보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학 내 디지털 콘텐츠연구 센터 책임자이며 사용자 컴퓨터 상호작용, 시각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관해 연구 중이다.

0 학력

1982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1984 KAIST 전산학과 석사

1993 미국 펜실베니아 컴퓨터 및 정보과학 박사

0 경력

1995 건국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교수

2002 유비쿼터스 컴퓨팅학회 초대회장

2012 건국대 학원창립 81주년 축하 기념 연구상 수상

2015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2015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 o (소속)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 팀장 o (확동) 장애묵 없는 생활화경인증제도 심사위유
- o (활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심사위원, 장애인 접근성 및 표준 관련 연구



강완식 팀장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정보의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정보 전달 수단 또한 발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 간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격차는 현재보다 크지 않았 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인쇄기술 및 전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생산부터 전달까지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전달 수단 또한 다양화되면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일반화되고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 또는 영상 정보로 유통됨에 따라 정보 접근권 침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각장애라는 감각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 및 방송 기반의 정보 제공 환경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1.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란 '시각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지침

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 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식 시력 검사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면 시각장애 인으로 규정한다.

1) 시각장애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외상 및 중독, 질환(안질환, 전신질환, 감염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며, 오늘날에는 과거에 많았던 전염성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오는 실명율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감소되었으나 백내장, 녹내장, 포도막염, 망막박리, 베체트병 등 질환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미숙아 망막증 등의 중도실명이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각장애의 원인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출생전후로 선천성 여부를 구분하나 교육적으로약 5세 미만에서 실명된 경우까지 선천적 시각장애로 간주한다.

2) 시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장애등급 장애정도

- *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만국식 시력 검사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 3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4급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5급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 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의 특성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 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2. 시각장애인과 정보접근 환경의 변화

과거 문자가 발달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구전으로 전달하던 시대에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정보의 습득과 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자가 발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 및 이용은 현 저히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정보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전달 수단 또한 매우 느려 그리 심각한 곤란을 격지는 않았다.

르네상스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혁명 이후 신문 등과 같은 정보 전달 매체가 발달하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습득량 및 정보 접근권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었는데 정보의 생산 및 전달 수단이 인쇄에서 벗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로 발전하고 20세기 말부터 컴퓨터와 정보통신,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환경이 도래하고, 현재 사이버 환경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생산 유통되면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보를 신문, 방송, 통신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웹 및 모바일 등 사이버 환경을 통한 정보 이 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지면을 직접 읽을 수 없으므로 시각장애인기관 등에서 신문의 지면을 컴퓨터

및 전화 등으로 녹음하고 이를 ARS 서비스나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 관]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 록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송의 경우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라디오의 경우 접근성에 장애는 거의 없으나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영상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화면해설 방송 등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 방송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방송환경이 위성방송, IPTV, 디지털방송, 케이블 방송 등으로 다양화되어 이를 조작하는데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방송접근 보장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화면해설 방송 등에 대한 제작 비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송물을 어떻게 시청해야 하는지 텔레비전 접근성 및 세톱박스 접근성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통신을 통한 정보 활용을 보면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음성만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얻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었으나,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환경의 도래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접근성 지침과 더불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웹 사이트는 극히 드문 상황이며, 특히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한 사이트도 약 1700여개에 불과하다.

3.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정보 취약 계층에 있어 정보화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은 흔히 말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여 동등하게 이용하라는 것과 같다.

현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많은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방송 환경도 과거에는 단순히 3~4개 채널만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TV 채널은 수백 개에 달하고 있으며, 거듭된 진화를 통하여 이제는 주문형 비디오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재 우리나라에의 정보 접근 보장과 관련한 법안을 보면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법', '저작권법' 등에서 장애인 정보 화 및 접근권 보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정보접근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제정 당시부터 우려가 되었던 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 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위에 대한 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하 여서는 포괄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 특정 사안만을 차별행위로 봄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일반 활자나 영상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많은 차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차별행위들을 구제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문화 향유권을 살펴보면 임의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출판물이나 영상물 등에 전자 자료 제작이나 화면해설, 자막 등을 요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웹 사이트 만을 규정함으로서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인트라넷이 이 법에 적용을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행정전산망 등이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아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환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구제할 근거가 부족하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와 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와 관련하여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인식 개선이다. 그나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법을 위반했 다는 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웹 사이트의 접근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인 지금 웹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인지해야 하며 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웹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개발자나 유지보수 업체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웹 사이트의 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인증기관은 규정대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가공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특정 사이트에 대해 끊임없이 시각장애인의 민원이 발생하고 나아가 국정감사에 까지 언급이 됨으로써 인증이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인증심사에 있어 사소한실수가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시각장애인 등정보접근약자의 입장에서 충분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해당기관은 특별한 조치 없이 인증마크만 내리고 지금까지 수정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분양 정보, 청약신청, 계약정보 조회,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모 공공기관 주택 청약서비스이다.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웹 접근성 국가공인 인증을 명시하여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 증마크의 취지나 목적과 달리 실제 사용자에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전가와 개발사의 개발과업 완료 확인하는 목 적에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웹 접근성 인증심사 신청을 개발사 도 할 수 있는 것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관리자' 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고 인증마크는 면 피용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정보 접근성 점검은 기술적인 지표 검사와 사용자의 이용 현황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용자의 문제점이 더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웹 사이트 특성상 개발과정에서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예외 없이 모든 콘텐츠가 실제 서비스가 되고 난 이후에만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개발사의 인증심사 신청을 막고 '서비스 관리자'만 인증심사를 신청하게 하고 방문심사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인증기관이 개발사와결탁되거나 '컨설팅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인증의 수준과 품질을 유지하고 저렴한비용으로 인증마크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비용을 규격화하여 규정된 투입 인력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증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가 직접 호소하기 쉽지 않으며 용기를 내어 재소 및 민원을 제기 하더라도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소송 또한 그 과정과 비용에 상당한 부담 이 있기에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이 인증제도에 기대와 의존이 높은 게 현실이다.

다음으로 방송 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 21조 3항'의 개정으로 방송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 동법 시행령 제 14조 5항 및 6항이 신설되면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시행령 6항에 의하여 2011년 12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으나,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규정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에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도 관련 부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접근환경에 대하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시청 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다루는 여러 법(저작권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정보화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에 차별을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ICT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를 잘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 관련된 법과규정을 위반했을 시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이 불법을 행한 것임을 인지하게 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농아인협회 임승택 이사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 o (소속) 한국 농아인협회 이사
- o (활동) 한국수화학회 위원회 / 제주농아복지관 수어연구자문위원회 / ICT미디어위원장 / 대한농아인농구협회 감사



임승택 위원장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삶 은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의 IT 강국으로 변화되면서 그동안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청각장애인들이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 그리고 3G서비스가 본격화되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화상통화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또한 인터넷 망을 이용한 화상통화가 보편화 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나 화상통화가 불가능하였을 때를 회상하면 통신기기로는 팩시밀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나 워낙 고가의 장비다보니 결국은 직접 만나서 수화언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곤 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보니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 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사각지대에서 있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4G를 넘어 5G 이동통신 기술에 접근하고 있어 정보통신의 발달이야 말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정보통신 속에서 의사소통의 영역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청각장애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점들

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통신, 방송기술로 인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ARS라는 음성위주의 서비스로 인해 청각장애인은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인들이 정보통신과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합니다.

1. 청각장애와 발생원인

청각장애(聽覺障礙, Hearing impairment and deafness)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이다. 미국 말하기 언어 듣기 협회(ASHA,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생리적 청각 시스템의 결손에 의한 청각 손실의 결과"이다.

청각 장애의 정도는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계 구분이 있다. 교육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다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聾)이라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 한다.

가. 외이(바깥귀)의 원인

귀지나 이물 등이 외이도를 막았을 경우에도 청각장애를 유발할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선천적 기형에 의해 외이도가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중이의 기형까지 있어 심한 경우 약 70d B¹⁾까지 전도성 청각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선천적 기형

^{1) 1}dB(0.1B)은 일률(전력 또는 음향력)의 비율에 상용 로그 값을 취해서 10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소리의 세기가 2배로 커지면 약 3.01dB만큼 값이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강도를 데시벨 단위로 나타낼 때는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와 비교된다. 예를 들어서 90dB(9B)의 소리는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강도가 109배나 더 크다. 또한 데시벨은 전압, 전류, 또는 음향에서 대응되는 양들의 비율을 나타낼 때도 이용한다. 이 경우에는 비율의 상용 로그 값에 20배 한 것을 1dB로 정의한다. 여기서 벨(bel)이라는 용어는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은 임신 초기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성 감염(풍진, 인플루엔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나. 중이(가운데귀)의 원인

① 알레르기성 중이염

최근에 와서 보다 많은 주의를 끌고 있는 중이염으로 유스타키우스관이 부어서 중이 내에 음기압(negative air pressure)을 일으키며, 이 음기압은 중이 내막(lining)의 혈청이 중이강 속으로 빨려들게 하여 청력 손실을 일으킨다.

② 급성중이염

일반적으로 감염에 의하며, 중이에 액이 차서 중이의 증폭 기능이 장애를 입게 된다. 약 30dB 정도의 청력 손실이 오나 의료적인 치료로 치유가 가능하다.

③ 삼출성 중이염

고막 안의 중이강 속에 끈적끈적한 진물이 차서 잘 안 들리게 되는 질환으로 30 dB 정도의 청력 손실이 온다. 원인도 잘 모르며,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고막천공

타박이나 중이의 과도한 압박, 기타의 염증에 의해 생긴다. 이소 골 연쇄가 건전하다면 20~30dB의 청력 손실이 온다.

⑤ 이경화증(otosclerosis)

중이염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등골이 난원창에 비정 상적으로 붙어 있게 하는 질병이다.

이경화증은 일반적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odhill & Guggenhein, 1971)

다. 내이(속귀)의 원인

내이의 장애는 대부분 심한 청력 손실을 일으키며, 소리의 왜

<다음 백과사전>

곡, 문제,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① 유전성 난청증후군

유전성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증후군으로는 Waardenberg증후군, Ushers증후군, Treacher Collins증후군 등이 있다. 유전성 농은, 우성 유전 형질(14%), 열성 유전 형질 (84%), 성관련 장애(2%)로써 유전된다(Lewenbraun & Thompson, 1986). 현재에는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증후군이 50개 이상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아동기 농의 약 50%가 유전성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한다(Nance, 1976).

② 뇌막염

출생 후 또는 외인성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청각 손실의 4.9%가 뇌막염에 의한 것이라 한다(Ries, 1973).

③ 풍진

임산부가 임신 3개월 이내에 풍진에 감염되면 농 아동을 출산할수 있다.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된 모체에서 난청, 심질환, 안질환, 정신발달지체 등의 선천성 이상을 동반한 아이를 낳는 수가 있으며, 이것을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풍진 증후군에서는 난청의 발생율이 82%로 가장 높으며, 안질환 19%, 심질환39%, 정신지체 34%의 발생율을 보인다. 이 원인 이 되는 풍진 이환은 임신 초기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특히 2개월 이내가 가장 높다.

모체가 풍진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에서도 난청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난청은 감 음성이고 고도 이상이다.

④ 모자 혈액 부적합

어머니와 태아가 각각 다른 Rh형을 갖게 되는 경우로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

⑤ 미숙

미숙은 농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또는 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⑥ 싸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최근에 확인된 바이러스로 아직 백신이 없으며, 선천적으로 감염 된다.

이 CMV(cytomegalovirus)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Williams et al., 1982) 감염된 아동의 1/3이 청각장애를 일으킨다. 이 CMV는 진행성 청각손실의 원인이 되어 서 즉시 발견하기도 어렵다. (Lowenbraun & Thompson, 1986)

⑦ 이경화증

골미로의 뼈의 흡수와 재생의 조직학적 병변이 계속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유전성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변은 골미로의 어떤 부위에서도 나타나 전원창 부위에서 가장 잘 일어나며, 그 결과 등골판과의 골 유착이 생겨 운동장애에 의한 전음 장애가 생긴다. 전원창 부위 이외의 병변은 무증상으로 지나는 수도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내이 장애를 유발시키는 일도 드물게 있다.

이경화증은 백인에게 잘 생기고 유색 인종에게는 드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것은 여성에게 잘 생기고 사춘기 전후에 발병하여임신으로 악화되는 일이 많다. 증상은 진행성인 난청으로 이명도있다.

고막은 정상이고 평형 기능 장애는 없다. 유전 형식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 발현율이 낮아서 유전 형식 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치료는 등골과 전원창에 대한 수술로 좋 은 청력 회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경화증에 의한 내이장애 는 개선할 수 없다.

라. 청각중추의 원인

청각 중추는 상위의 부위로 올라갈수록 고도의 기능을 가진 다른

작용 즉, 언어·판단·기억·학습 등과 같은 작용을 하는 중추들과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청각장애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학습장애, 뇌성마비 또는 정신 문제 등을 동반한다.

이러한 장애의 원인은 뇌중추의 발육 부진이나 손상이 있는 기질적인 경우와 기능적으로 정신과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자 복지편람, 1981).

마. 기타 원인

① 약물에 의한 난청

약물에 의해서 난청을 일으키는 것은 그 발현 기전에 따라 두 가지 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로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신경 독으로 청각에 작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의식 장애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신경증상 중에서 난청이나 이명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난청, 이명, 현기증 등의 청신경영역의 장애만을 단독으로 일으키든지 또는 이것을 주된 증상의하나로 하는 경우이다.

② 음향에 의한 난청

일반적으로 음향에 의한 난청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그 첫째는 통상적으로 듣지 못하는 강대한 소리가 갑자기 들려와서 그로 인해 청각 기관이 손상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한 번 들어서 귀가 큰 장애를 받을 정도의 강한 소리는 아니나 매일같이 계속 청취함으로 인하여 모르는 사이에 청각 기관이 손상되어 일어나는 난청의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를 급성 음향성 난청이라고 하며, 둘째의 경우를 만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③ 외상에 의한 난청

청기에 가해지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청각 기관이 손상되어 난청이 되는 수가 있다. 이것을 외상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난청은 외적 자극이 물리적으로 직접 청기를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외

- 상, 청기를 내포하고 있는 두개골 또는 경부에 가해진 외적 자극, 그리고 기압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청기가 손상되는 경우 등이다.
 - ④ 메니엘병과 돌발성 난청

메니엘병이 난청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메니엘(Meniere)이 1861년 1월 8일 파리의 의학회에 내이의 병변으로 급작스러운 현기증, 오심, 구토, 이명, 난청이 온다는 것을 발표한 후부터였다. 그 당시까지는 이러한 증상이 두개 내부의 질환으로 온다고 알려져 있었다. 메니엘의 발표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내이에 기인하는 현기증, 난청 등을 모두 메니엘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돌발성 난청은 최근에 와서 알려진 질환이나 이것도 메니엘병의한 유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돌발성 난청의 최초 보고는 1944년 Dekleyn이 '건강하던 사람의 갑작스런 완전 또는 부분적 인 난청'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오늘날의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으로확립되었다. 따라서 메니엘병과 돌발성 난청은 그 발작의 반복성이라는 큰 특징이 다르므로 별개의 질환으로 이해되 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두 질환은 드물지 않고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에 의해서 청력이개선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노 관택, 1992).

2. 청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가. 청각장애

- ①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 (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 ②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 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 ③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최대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 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 장애

①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 ②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③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 ④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 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 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 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 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 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3. 청각장애의 특성

청각장애는 위에서 보다시피 난청에서 농(청각)까지 매우 다양하며 청력 손실이 청각장애인의 기능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의 기능과 특성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형, 청력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아동의 연령, 아동의지능, 가정과 지역사회가 청각장애에 대응하는 태도 및 지원 능력,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 및 교육 경험 정도 등이 포함되고 난청은 대부분 청각을 통해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로 정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한 요구들이 간과되기가 쉬울 수 있으며 농(청각)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므로 의사소통의 제약이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말과 언어의 발달 문제로 인해 교과과정에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접근 방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 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정서적 발 달과정에서는 청인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인과의 관계에서 역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 하며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만의 유대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 문화 또는 농 문화(Deaf culture)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인들은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함으로써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며, 자신들만의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청각장애인 사회를 위한 많은 자발적인 모임과대표성을 갖는 청각장애인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인 사회는 일반 사회에 포함된 하나의 소수 사회로서 사회적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과 정보접근 환경의 변화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청각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나 팩시밀리가 상용화 되었던 구세대를 비롯하여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시대의 개막으로 1~2G세대부터는 문자전 송서비스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00년대 후반 3~4G세대는 초고속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각장애인들도 일일 생활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대국의 반열에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햇빛 아래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청인들을 위해 음성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자 혹은 영상으로 전환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청인의 입장에서는 음성서비스로 모든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 음성을 통한 본인인증시스템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청인들은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보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고령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맹이 많고 정보통신 기 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습니다.

젊은 청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40대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은 모국어인 한국수어와 밀접하여 시각정보 중 수어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문자보다는 수어가 친숙하여 전국에 있는 수어통역 센터에 요청하여 금융정보제공, 각종 정보통신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와 동행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인들과 비교하여 금전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에게 라디오라는 매체는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텔레비전도 정보제공이 안되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한글자막이 의무적으로 제공되도록 '장애인방송접근 보장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냈으나 라디오는 아직까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통신기기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방안

가. 한글자막을 통한 정보제공.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16년까지 지

상파 100%를 비롯하여 고시의무사업자와 필수지정사업자 등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상파 DMB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이 불가능하고 특히,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영상물에는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 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제공되는 영상물과 유튜브 영상물 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이 삽입되어 일부 제공되고는 있지만이는 한시적인 방편일 뿐 모든 영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한글자막을 직접 제작하여 상영해야 합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도 고객의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며 정당한권리입니다.

나.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정보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와 한국수화 언어법 등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지만 아직도 지상파 방송사 및 고시의무사업자에 5%에 한해 수 어방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보도전문채널만 제공할 뿐 교양, 다큐, 교육, 예능 등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폐쇄형 수어방송인 스마트 수화방송을 통해 비장애인 시청자의 화면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방송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한 모든 웹사이트에 청각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화언어를 통한 영상정보제공 서비스도 제공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 접근도 한국수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정보 지원센터 설치

시각 · 청각장애인은 감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도서관을 전국에 설치하여 정보와 교육의 혜택을통해 수많은 박사가 배출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문 지원센터의 설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 현, 단위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정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이곳을 통해 방송물, 교육교 재, 동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영상물이 제작되고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방면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지원센터는 수어와 자막을 기본으로 삽입하여 DVD 형태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라디오를 일생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인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라디오 방송을 문자로 제작하던지 아니면 수화언어를 통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영상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정보통신에 접근하도록 한다면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가 "그림의 떡"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이것은 예를 들어한 비유지만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도록 보편적이고 정당한 정보접근을 위해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윤은미 본부장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 o (소속)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본부장
- o (활동) 고용노동부 서울시경기도 사회공헌활동 / 행정안전자치부 불법의료기기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사업



윤은미 본부장

안녕하세요.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은미입니다. 저희법인은 인생 2모작 ,3모작을 설계하는 장년층 즉 50플러스 세대의 취업과 보람일자리, 사회공헌활동을 연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신이 현재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it 분야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은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한두 가지 기능만 익혀서 일처리가 가능했지만 업무처리 방향이 급변하다보니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왜 컴퓨터를 못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컴퓨터 세대가 아닌 장년층에게는 컴퓨터에 관한 용어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매뉴얼을 읽고 배우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한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처럼 고령자 분들도 읽을 수는 있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it도 아니고 ict로 바뀌어 가다보니 많은 장년층들이 점점 it문

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고령자들은 활용을 얼만큼하고 있을까요? 물론 장년층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15년부터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 몇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그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신 스마트 폰을 단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교육과정 중에 동영상 만들기와 사진 편집 있는데 이과정이 장년층들에게 인기가 1위입니다. 손주들 사진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는 과정 중에는 졸거나 집중하 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간단히 하는 블 러그에 사진 올리는 거나 글을 퍼오는 작업들이 고령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거죠...

저희가 사회공헌이나 취업지원을 위해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올려놓는데 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는 작업이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지구에서 달나라 가는 것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전화로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it강국에서 이게 무슨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고령자분들에게는 문서 다운받아 파일로첨부하는 작업이나 블러그, 페이스북 이런 말이 외계어 수준으로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해교육을 하는 야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화보다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익숙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에게도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카카오스토리

에 아이들 사진을 올리다보니 어르신들이 신세대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배워야만 대화가 가능하게 된거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요.. 이런 현실이다 보 니 지자체에서 정보화 교육이나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할 때 지속 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높지만 그런 교육을 제 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워져서 정보 취약계층으로 되는 겁니다.

IT강국! 인터넷 정보화 홍수의 시대! 무궁무진한 인터넷의 좋은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분들의 접근권은 아직도 "미흡" 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웹접근성확보와 세대간의 문화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가장 절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 고령자분들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EMO -

언론이 바라본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및 실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주상돈 센터장



언론이 바라본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및 실태

- o (소속) 전자신문 센터장
- o (활동) IP노믹스 발행인 /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대표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MOT)겸임교수



주상돈 센터장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이병돈)가 공동 실시한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결과, 국내 취항한 외국항공사(이하 외항사) 10곳과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외항사 10곳의 정보접근성 평균 점수는 64.43점으로 시각장 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단 의미다.

실제로 국내 취항 주요 외항사 대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종합점수(77.1점)를 기록한 타이항공과 최하점 (40.8점)을 받은 필리핀 항공 모두 점수 분류표에 따르면 '미흡'에해당한다.

평가 대상인 10개 외항사 중 타이항공(77.1점)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와이안항공(76.9점) △에어프랑스(74.9점) △캐세이패시픽(70.2점) △아나항공(69.9점) △일본항공(69.8점) △동방항공(62.6점) △에어아시아(54.1점) △싱가포르항공(48.0점) △필리핀항공(40.8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외국항공사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종합 결과 (주: △총점 △기술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100점, 자동툴 평가는 100%를 각 만점으로 한다.)>

순위	기업명	총점 (점)	<u>자동물</u> 평가 (%)	기술성 평가 (점)	사용성 평가 (점)
1	€THAI ≅on##	77.1	83.2	88.9	65.3
2	日本WAIIAN HIRLINS 新会の記載者	76.9	86.0	88,6	65.2
3	AIRFRANCE / ⋈⋈ଲ⊈△	74.9	80.2	80.5	69.3
4	CATHAY PACIFIC	70.2	84.3	82	58.4
5	ANA SUIDE	69.9	77.7	81	58.7
6	高元都是	69.8	74.8	79.9	59.7
7	中國東方航空 CHINA EASTERN 条5型表	62.6	60.9	72.8	52.3
8	Air Asia DRD-04-NOH	54.1	45.6	66.8	41.3
9	SINGAPORE 설가도로함공	48.0	66.6	66.2	29.7
10	Philippine Airlines 필리한창공	40,8	42.5	53.4	28.1

주요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정보접근성 평균 점수도 60점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따라서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쇼핑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종합 1위인 11번가(70.6점)부터 최하위에 오른 홈플러스(46.9점)까지 모두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을 기록한 11번가 (72.5점)마저 점수 분류표에 따르면 `미흡`에 해당한다. 뒤를 이은 스위메프(67.4점) △이마트(66.7점) △옥션(65.4점) △G마켓(64.1점) △롯데마트(61.9점) △쿠팡(56.5점) △티몬(55.9점) △농협a마켓 (53.3점) △인터파크(51.4점) △홈플러스(46.9점)는 `매우 미흡` 수준이다.

[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종합 결과 (단위: 점)

순위	기업명	총점	전문가 점검	사용자 점검	자동점검
1	11번가	72.5	83.6	61.5	79.7
2	위메프	67.4	68.9	65.9	88.0
3	이마트몰	66.7	69.5	63,9	86.5
4	옥션	65.4	78	52.7	81.6
5	G마켓	64.1	79.3	48.8	81.2
6	롯데마트	61.9	66.1	57.6	93.5
7	쿠팡	56.5	71.4	41.6	72.6
8	티몬	55.9	65.5	46.3	84.4
9	농협a마켓	53, 3	68.8	37.7	58.7
10	인터파크	51.4	61.2	41.6	52.0
11	홈플러스	46.9	60.1	33.6	60.5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종합 점수는 전문가 점검과 사용자 점검을 각 50%씩 반영한 결과로, 자동 점검은 점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만족도를 따져본 `사용자 점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사용 만족도 평균 점수는 50점 이하로 떨어진다. 11개 업체 대부 분이 주요 과업 5개(△회원가입 △상품 상세정보 확인 △상품 구 입 △문의하기 △이벤트 확인) 중 한두 개 기능만 지원하는 단계 에 그쳤다. 회원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 결과

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심사는 기술적인 지표에만 기준을 두고 페이지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지만, 사용자심사는 사용자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의 불편함과 어려움을점검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에서 메인페이지를 제외한 서브페이지 부분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기술성 심사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수 있지만, 사용자 심사는 처음 접하게 되는 메인페이지로 인해 전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메뉴, 회원가입, 로그인,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수로 거쳐야하는 중간과정 일부분에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이용 격차에 대한 보도를 위해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정부의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8, 90점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자심사를 실시한 기관의 결과를 검토해보고 실제 장애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부발표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사용성입장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보 이용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에 사용자 의견을 충분이 반영하지 않은 현상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뿐 아니라 몇해 전 언론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중재기관의 해결방법에도 나타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를 하게 된 계기를 밝히면 국가인권위 제소 후 기각으로 인해 언론에 호소하게 된 사연이다. 모 쇼핑몰 홈페이지를 시각장에 인이 이용하기 불가능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통보 받았다. 이런 이유로 민원을 기각 당한 그 시각장애 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 2013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모든 기관·기업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 웹사이트의 '면피용' 접근성 개선 문제는 꾸준히 불거져왔다. 이후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사이트 수는 늘었지만 표면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증만을 위한 형식적 개선일 뿐 실사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도 한계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관련기관과 병원, 교육 등 '스마트 정보접근성 평가' 대상을 확대해우리 사회 제반 영역의 정보 접근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 MEMO -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지원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지원

- o (소속)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o (활동) 성균관대학교 BK21 고령화 및 장애 대응 삶의 질 향상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장 / ISO/IEC 표준화 전문위원 / 가전제품접근성표준기술위원회 의장 / 대한인간공학회 이사



이성일 교수

1. 우리나라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장애인 • 고령자의 정보격차와 정보통신 접근성 문제는 정보화 혁명 이후에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의 삶이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로 인해 급격하게 그 모습이 변 화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인터넷과 웹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고 휴대전화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인터넷의 접근과 휴대전화기의 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사회계층이 생겨나면서 정보격차, 즉 digital divide 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와 2000 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인터넷과 휴대전화기의 접근성이 장애인들 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도 중반에 스마트 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앱과 그 생태계 서비스가 또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단말기제조사 와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던 통신시장의 질서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자유롭고 열린 시장질서로 개편되면서, 보다 소통이 원활하 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흐름을 생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방송과 정보통신에서 국민의 소통의 자 유와 권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질서와 책임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개입이 없다면 서비스의 질과 그에 따른 비용이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점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이 수렴점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긍정적인 지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정부가 법제도와 정책으로 모든 국민 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옳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모든 국민과 동등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도 이에 해당된다.

정보화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장애인들과 고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제도적인 노력은 거의 모두 웹 접근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는 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정부의 서비스도 대면 서비스에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로 많은 분량이 옮겨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홈쇼핑이니인터넷 뱅킹이니 하는 주요 서비스가 얼마나 비대면 웹 서비스로바뀌었는지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 중심의 정부 정책방향도 옳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지원하는 중요한 법률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조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하고 있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련 지침(웹접근성 표준지침)이 고시로 공표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령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웹 접근성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수행을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동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시행하게 하였고,시행령에서 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전자 및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 이를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이러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차별을 당한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사항을 조사한 후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령에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웹사이트 이외에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인트라넷조차 이 법에 적용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디지털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즉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의 개념이 보다 다양해지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교환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회에서 정보의 개념에 모바일 앱을 포함시키자는 개정 논의가 발의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은 웹 사이트와 기껏해야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의 접근성을 다루는 데에서 끝이 나고 만다.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위의 두 법령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규정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가 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나서 변화한 융합 환경과 시장 흐름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시각장애인 등이 모바 일 기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 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 아예 별 생각이나 의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모바 일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데에는 동법 들이 애매한 범위로 막연하게만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개념과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하여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참조). UN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2항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 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실 모바일 앱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지침도 2016년에 국가표준으로 고시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 느 법령에서도 이러한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정부의 정책에 구체적인 예산과 함께 반영되기 위해 서는 그 내용이 법제도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 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근거 가 되는 법령 조항이나 시행령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은 현행 법제도상 웹 접근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가정보화기본 법"에 충실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웹 품질인증의 시행과 웹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가 접근성 정책의 전부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 접근성 문제

모든 것이 연결되고 (IoT) 보다 지능적인 (smart) 사회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다보스 포럼, 201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가 꾸준히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은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 ① 컴퓨터 화면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냉장고 (예. 삼성 스마트 허브 냉장고)
- ② 수면이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기 와 스마트 시계 (예, Fitbit)
- ③ 낙상이나 사고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보내주는 위 치추적장치
- ④ 모바일 기기만으로 결재와 송금이 이루어지는 핀테크 서비스 와 디지털 뱅킹 서비스
- ⑤ 자동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홈 시스템 (예, 아파트 출입관리 입출력 패드)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간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접근성 정책은 제도상으로는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지원해야 하 는 분야이므로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기대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들은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중복적으로 다루는 신산업 분 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접근성"은 어느 부처 의 관련 법령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신규 제품들 과 신규 서비스들이 출시되면 이를 시장에서 지원하거나 규제하 는 관련 법령 및 정책들이 후속되어 준비되기 마련이지만, 이들 분야에서의 "접근성"은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고 어느 부처에서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다. 일례로 위에서 소개한 가전제품에 새로이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은 이를 보장하는 법률상의 조항 이 전혀 없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사항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사항도 아니다. 더구나 가전제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루는 산업분야가 확실히 아니며,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루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성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제도상

지원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역시 누구의 소관사항도 아니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전자정보에 모바일 콘텐츠가 향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냉장고에 붙은 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앱 콘텐츠는 "모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은 역시 어느 부처의 정책적 지원대상도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온갖 종류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접근성은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전자정보의 정의에 웹 사이트와 더불어 모바일 콘텐츠를 추가하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스마트 제품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접근성 보장이 가능해질까? 과연 "모바일"이라는 분야를 전자정보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콘텐츠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루어야 할신산업분야이자 의료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산업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다. 제품과 콘텐츠의 특성상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더욱 유용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와 인터페이스를 담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이들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본법 체계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다음 그림과같이 모바일과 스마트가 결합된 일상 속의 미래형 인간을 보면어떠한 기기와 콘텐츠가 앞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있다.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headset computer나 AV glasses (예, Google Glasses)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출처: Shutterstock Wearable Technology Infographics)

3.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손질보다는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정보통신 관련 인터넷, 방송통신, 멀티미디어 등의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및정보화 관련 법제도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령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이들 법령에는 이미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 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교육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의 관련 부서가 접근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인터넷 이용의확산을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이들 법령에 포괄적인 정보격차 해소라는 용어만을 담고 있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법령에 의한 유효한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령에 이미 "개인정보 보호"나 "청소년 유해매체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등, 정보 접근성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사용자인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을 명시하는 조항이 나란히 첨부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을 그 범위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법령들이다. 이들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정의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정의에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수만 있다면, 앞서 제기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 등의 접근성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정책의 설립과 집행을 "국가정보화기본법"의 틀 안에서 한 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일원화시킨 방안은 결과적으로 웹 사이트 접 근성이라는 1차원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여 웹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라는 단편적인 시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급변하는 정보 통신 및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대책을 마련해야 접근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제도와 정부의 대응 정책 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 대응 또한 느리고 내용면에서도 한계 를 보인다. 장애인들은 웹 사이트 이외의 정보통신 환경에 유용하 고 의미 있는 접근과 이용이 차단되어 있다고 느낀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라는 제도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현재의 정책 방향에 서 웹 사이트의 접근성도 실제로는 만족할 만큼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사용자인 장 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조항 실천에만 충실한 시책으로 변질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단순히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 사물인 터넷 등의 신산업과 관련된 융합 개념의 시장 환경이 접근성 정 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 방송의 진흥과 연관된 모든 법제 체계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다양한 정보통신 및 방송 관련 법령들에서 명시하게 되는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아닌 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같은 다른 기관들로 이원화, 또는 다원화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유 연한 장애인 • 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이 마련되고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만 있다면, 당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정보통신 접근성 요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적인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법제도의 충분한 개선 을 통해서 이러한 혁신을 주문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통신 및 방송 접근성 정책 관련 현행 법제도를 비교하는 도표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접근성 정책	한국	미국	관련 국내표준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성 및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국가정보화기본법 (웹사이트에 국한)	통신법 255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 예산에 의한 조달에 접근성 반영		재활법 508조	
멀티미디어 및 방송 접근성		21C CVAA	
재난방송 접근성		21C CVAA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 MEMO -

별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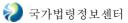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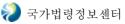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 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 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하다.
 -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 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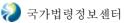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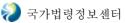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 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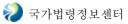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 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 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 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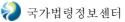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 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 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 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 문자통역사 · 음성통역자 ·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6.2.3.>
 -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 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 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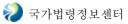
-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 · 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 용한다.



-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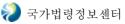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 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 ·거부하는 경우



-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 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 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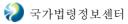
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 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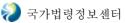
-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 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 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 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 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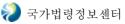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후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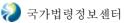
-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차별행위의 중지
- 2. 피해의 원상회복
-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 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 차별의 고의성
 -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 ③ 삭제 <2010.5.11.>
 - ④ 삭제 <2010.5.11.>
 -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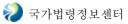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국가정보화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6.22.>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 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 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 하다
 -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 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 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 보통신망을 말한다.
-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 디서나 고속 · 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 신기기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 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 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ㆍ정신적 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 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 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 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 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5.6.22.>
 -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 도화
 -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유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 · 제도의 개선
 -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 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 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 · 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22.>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 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 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2015.6.22.>
 -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 의 도입・활용
 - 7. 정보화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 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6.22.>
-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혐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 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 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6.22.>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 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1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 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 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 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



- 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 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 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 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 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 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 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 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 •시햇하고, 민간 데이터세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야 하다.
 -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증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햇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혐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 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 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 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98 |

-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 법제처

-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 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 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 · 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 · 해소 < 개정 2013.5.22.>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 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 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햇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전문개정 2013.5.22.]

-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 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린인터 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 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 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 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 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 · 홍보
 -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 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 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 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 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 여서는 아니 되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 는 사업자
 -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 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 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정보문화의 창달
 - 2. 정보격차의 해소
 -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 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 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 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 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



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 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목개정 2013.5.22.]

-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한 구제조치
 -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5.6.22.>
 -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제목개정 2011.5.19., 2015.6.22.]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개정 2015.6.22.>

-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 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 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 ·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초고속국가맛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 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 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하다.

[전문개정 2015.6.22.]

-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 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 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 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 송 · 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 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6장 보칙 <개정 2015.6.22.>

- 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 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 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49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전문개정 2015.6.22.]

- 제51조(권하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하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 위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5.6.22.]

-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6.22.]

부칙 <제13340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 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